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 소홀

기 관 명 북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용

부산광역시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부과·통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농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을 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되어 있다.

또한 농지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부서 등 인·허가 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 농지전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협의조건을 부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부서 등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축허가증 등 교부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체납이 발생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등 5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촉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표】와 같이 총 22건, 392,815,29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된 상태로 있다.

【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2016.12월말 기준)

부과 권자	건수	체 납 현 황(원)				
		농지보전 부담금	가산금	농지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계
계	22	284,878,300	14,290,300	44,719,890	48,926,800	392,815,290
북 구	1	9,262,500				9,262,500
사하구	7	145,250,000	7,262,500	25,560,890	44,818,800	222,892,190
강서구	7	77,889,200	5,078,930	19,159,000	4,108,000	106,235,130
기장군	6	39,424,200	1,948,870			41,373,07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	13,052,400				13,052,400

※ 가산금(5%) 부과는 2009.5.27.부터 적용

조치할 사항 북구청장, 사하구청장, 강서구청장, 기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정]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392,815,290원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체납자에 대해 농지전용 동의조건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